2018년도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보고사항(2018-15호)

2018년도 제6차 회의록(요약)

2018. 10. 5.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1. 회의명

○ 2018년도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2. 회의소집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3.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8. 7. 30(월) 07:30~10:45

○ 장 소 : 더 플라자 호텔 오키드홀

4. 출석위원 및 회의 참석자

□ 출석위원 : 15인

○ 보건복지부	박능후 위원장
○ 기획재정부	代 이찬우(고형권 위원)
○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위원
○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상철 위원
○ 대한상공회의소	이경상 위원
○ 중소기업중앙회	이재원 위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광호 위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유재길 위원
○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황병관 위원

○ 한국공인회계사회 윤경식 위원

○ 한국외식업중앙회 최규완 위원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문미란 위원

○ 참여연대 이찬진 위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흥식 위원

○ 한국개발연구원 최정표 위원

□ 기타 참석자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류근혁(간사)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 최경일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직무대리 이수철

5. 회의진행순서

○ 개 회

○ 의결안건 의결

○ 보고안건 논의

○ 폐 회

6. 상정안건

의안번호	안 건 명
의결 18-8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
보고 18-13	2018년도 5월 말 국민연금기금 운용현황(잠정)

7. 토론요지

□ 의결 제18-8호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

○ (이경상 위원) 안건 내용이 제반여건 구비된 후 당초에는 방안검토, 지금은 이행방안 마련,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음. 이렇게 보면 완전히 마련하는 게 확정이 되는 스탠스이고 앞으로 제반여건을 봐가면서 검토하겠다는 것과 다르다는 생각이 듦. 주주권행사 범위, 경영참여 부분은 기관투자가의 중요한 역할은 선진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한테 부족한 것이 시장에서의 어떤 건전한 감시자 역할, 그 역할이 중요한데 경영참여 부분이 강조되게 되면 시장에서는 불안해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 드리고 싶음.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임원을 선임하는 것을 추천하는 것임. 예를 든다면 어떤 특정기업의 임원으로 시민단체 누구를 추천한다는 사안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도 할 것 같음. 경총 같은 경우 부회장께서 오시면서 갈등내용 같은 게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자칫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현 단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음. 의결권행사 사전 공시 부분에 보면 당초에는 사전공개 자체는 글로벌스탠다드라고 하였음. 5대 연기금 중 4위인 캘퍼스만 하고 있고 시장 내에서 주식시장 비중이 0.3% 정도밖에 안 됨. 일본 5%, 네덜란드 4% 되는데 사전공시

를 안 하고 있었음. 우리나라가 6%인데 완전히 파괴적 영향력인데 글로벌스탠다드는 사전공시 하지 않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더 합리적인 방향이 아닌지 생각이 들어 재검토 했으면 함.

○ (이상철 위원) 대체적으로 경총 예 든 것 빼고는 이경상 상무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 함. 첫 번째 원래 것에서 경영참여 주주권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결정하면 일단 경영참여로 인정이 되고 5%룰에 대한 혜택은 없어지는 것 아닌지

○ (간사 류근혁) 만약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제안해 주신 내용대로 참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혜택은 다 못 받게 되는 것임.

○ (윤경식 위원) 제안내용으로 의결권행사가 바뀐다 하더라도 5%룰 문제 때문에 제약이 있을 수 밖에는 없겠다는 얘기임. 원칙론적으로는 이렇게 제안내용대로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기는 하겠지만 법률적으로「자본시장법」의 어떤 개정, 국회 차원에서의 어떤 개정문제가 선결되는 것이 우리가 만드는 이 규정들이 상당히 하위규정인데 이렇게 강하게 해 놓는 것이 법률적으로 맞는 것인지 궁금함.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법률개정이 전제가 되지 않는 한 엄청 제약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선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함.

○ (이찬진 위원) 현재 기금운용위원회 규정에서도 주주권행사의 범위가 제한이 있었는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음. 찾아봐도 명시적인

제한규정은 없었음. 자기 구속적으로「자본시장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본문 및 각호에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로 해석됐을 때에 기금운용본부가 겪어야 될 애로사항들을 고려하여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 부분을 원천적으로 안 해 왔던 것이지 규정으로써 제한한 부분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음. 이 부분이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서 오히려 제한하는 형태로 되어지는 첫 걸음을 가게 되는 것이어서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특이한 역진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는 모습이 있다는 말씀드림. 지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를 하기로 한다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건 내지 많아야 한 건 나올까 하는 그런 경영참여의 상황,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있을 때 기금운용위원회 아니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하든 간에 협치 거버넌스에서 신중한 결정 끝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조직적인 결단을 하게 될 경우 예외적으로 발동 되어지는 것이지, 모든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수백 개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한다는 그런 결정하는 것은 아님. 특정 투자대상기업이 무슨 대형 사고를 쳐서 국민연금기금에 구체적인 손실을 초래할 위험,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한 예외적인 경우 대한항공이나 이런 경우 발생했을 때 10% 이상 갖고 있다고 전제할 때 10%룰을 감수하고라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때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임. 재계에서 걱정할 정도의 이슈로 일반론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임. 원칙주의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주주권이라는 것을 어떤 나라도 이렇게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는 규정을 자기규정을 두고 하지는 않음. 운영을 그렇게 하느냐에 관한 문제지 국민연금이 이런 규정을 수정(안)처럼 한다 하더라도 연금이 경영참여 주주권행사하는 조직이 아님. 장기투자자로서 자기 자산을 보전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경영권에 도전하거나 그 정도의 거버넌스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우려를 일반화하기는 곤란하지 않나 그런 의견임.

○ (代 이찬우 차관보) 수탁자책임위원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주주권행사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만약 책임이나 결정을 안했을 경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중요한 주주권의 가치 훼손이 있다고 하여 별도로 의결할 수 있는 것인지

○ (간사 류근혁)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됨.

○ (代 이찬우 차관보) 국내주식에서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게 작년 말 기준으로 평균 7% 정도, 5%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276개임. 적극적인 경영참여를 하는 주주권행사 하는 케이스가 아주 예외적이고 없었으면 좋겠음.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경영참여를 하면 시장에서 주는 시그널 차원에서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음. 글로벌스탠다드를 따라가게 되지만 기금규모라든지 국내주식에 차지하는 비중 봤을 때는 비교할 수 있는 게 일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그런 상황에서 연금이 적극적인 경영참여에 들어간다고, SC를 마련해서 시그널을 준다고 하면 상당한 경영활동에 제약을 줄 수가 있음. 만약 없다 하더라도 대한항공이나 이런 케이스의 문제가 됐을 경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충분히 결정해서

다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구속적인 식의 규정을 만들었다고 보이지는 않음. 처음 도입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이기 때문에 일단 집행되는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됨.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금운용본부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전문성이나 독립성 부분이 어느 정도 갖춰지고 난 다음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임. 여러 가지 국민연금의 거버넌스에 대해서 논의가 계속 있어 온 것은 사실이나, 현재 있는 수준의 전문성이나 독립성을 봤을 때는 다른 나라와 같은 적극적인 경영참여를 하는 데는 아주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닌지 생각을 함.

○ (이찬진 위원) 수정(안)을 제안했던 사람이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원안하고 수정(안)은 본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음. 원칙에 관한 문제일 뿐이고 실질적인 운영에 관한 오퍼레이팅 되는 결과물은 동일한 것임. 정부 원안의 경우 원칙적인 금지 적극적 주주권행사를「자본시장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각호에 저촉되는 그런 주주권행사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다만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놓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제가 제안하는 것은 거꾸로 원칙적으로는 원래 주주권행사는 제한이 없는데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제15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그런 경영참여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은 그냥 기금운용본부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그렇게 허용하지 않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기금에 현저한 손실이 있다는 엄격한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 결정을 했을 때만 발동할 수

있다는 정도로만 되어 있는 것이어서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부분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예외적으로 허용해서 결정하는 그것과 차이는 사실 없는 부분임. 주주권을 자기 구속적으로 제한을 하는 것이 인게이지먼트나 할 때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어 실질적으로 2대 주주 내지 3대 주주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을 못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는지에 관한 우려 때문이지, 원칙론까지 훼손하면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문제 정도이지 원칙과 약간의 선회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음.

○ (정광호 위원) 회의성립과 관련된 부분인데 대참자도 발언권과 의결권이 있는지.

○ (간사 류근혁) 정부 부처는 가능함.

○ (정광호 위원) 어떤 근거인지, 다른 사람들은 대참을 못 시키는지.

○ (간사 류근혁) 규정상 그러함.

○ (박능후 위원장) 규정에 명시되어 있음.

○ (정광호 위원)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자체를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는 취지로 들리는데 매우 유감스러움. 기금운용위원회 문제와 관련하여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삼성이나 대한항공이나 기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금운용위원회가 이 부분을 지금 이 취지에 맞게 자체 결정해서 논의한 적이 있는지.

○ (간사 류근혁) 안건으로 올라오면 논의는 가능함.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개별기업에서 그렇게 한 것은 저번에 위원장께

서 부의하신 대한항공에 대한 공개적인 서한 보내는 것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음.

○ (정광호 위원) 논의되고 있는 주주권행사의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경영참여와 관련된 것들은 실제로 논의된 적이 없음. 그런 얘기가 제기는 됐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정도 수준까지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없었던 것 아닌지. 현재 논의하고 있는 이 부분이 통과되지 않는 한 기금운용위원회가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있는지 묻는 것임.

○ (간사 류근혁) 할 수 있음.

○ (유재길 위원) 회의진행 관련하여 지금 수정(안)으로 나온 것인지, 복지부 원안으로 제출하신 것인지

○ (간사 류근혁) 수정(안)으로 의견을 주신 것임. 수정이 되면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수정이 되는지를 보고 논의를 하시라고 편의를 위해서 한 것임.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 주시면 되는 것임.

○ (유재길 위원) 이 수정(안)도 부족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을 한다고 해서 급박하게 대한항공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금운용위원회가 그 적절한 시기에 이것을 의결할지 이러한 문제점도 느껴짐. 당초 복지부가 낸 원안이 부결되면 전면 허용으로 가는 것인지, 수정(안)이 헷갈림. 당초 복지부가 단계적으로 하자고 했던 이 안건이 부결되면 전면 허용으로 가는 (안)이 자동 성안이 되는지.

○ (간사 류근혁) 어떻게 부결되고 어떻게 논의되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음. 당초 안건이 부결이 되고 다른 (안)으로 제시가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전면 허용이 되려면 당초 조항이 부결되고 전면적으로 바로 하라라는 의견이 의결이 되어 여기 (안)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임.

○ (유재길 위원) 복지부가 처음 사전설명회 할때 1(안), 2(안)이 있었음. 1(안)이 부결되면 전면 허용하는 2(안)이 자동 성안이 되는 것인지.

○ (간사 류근혁) 그렇지 않음. 이 초안이 부결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2(안)처럼, 새로 제안하는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의결이 되면 그대로 가는 것임. 이것 말고 부족하다는 다른 (안)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제안을 해 주시면 되겠음.

○ (이찬진 위원) 수정(안) 부분 내용이 달라서 말씀드림. 어제 저녁에 회의진행을 위해 보내드린 그 내용대로 되어 있지 않음.

○ (간사 류근혁) 그 부분은 깔았음. 저번에 회의할 때 공식적으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인쇄된 책자에 있는 내용과 같음. 어제 주신 것은 인쇄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다음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하신 내용이 아니여서 별도로 책상 위에 올려놨음.

○ (이찬진 위원) 제안내용은 기금운용위원회 의결로 정한 주주권행사 이 부분 수정(안)이 부결되었을 경우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정도의 의견을 드린 것임. 사실 별도의 추가 제안내용 반영자료는 저희의 수정(안) 관련된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한 것임. 그래서 이 부분은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음. 원래 제안한 내

용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제안내용이 원칙과 관련해서는 기금이 보유한 기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투자대상기업에 대해「자본시장법 시행령」본문 및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의결한 주주권행사 정도로만 제한을 해서 제안하는 것임. 지침도 그런 기조 하에서 정리한 게 있고 주주제안에 대해서 수정하는 주주제안 등 이 부분은 했고 이것은 회의 그 무렵 워딩해서 직후에 드렸던 내용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2쪽, 3쪽 넘어가는 별도의 자료에서 보면 만약에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관련된 수정(안) 관련되어 규정이 바뀐다면 이렇게 바뀔 것 같다는 부분이었는데 신설하는 게 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이런 아주 예외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투자대상기업에 대해서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주주제안 등「자본시장법 시행령」이런 것에 따른 주주권행사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에 위탁운용사에, 이 부분은 나중에 조항들을 정리해서 보내드린 문구임. 그래서 이것은 원래의 정리한 내용과 조금 다르다, 그래서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수정(안)을 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음.

○ (박능후 위원장) 분명하게 규명을 하고 갔으면 좋겠음. 추가 회의자료 1쪽 ‘안건내용’ 이 원래 나왔던 동의(안)이고 ‘제안내용’이 지난번 수정(안)으로 나왔던 것으로 생각함.

○ (이찬진 위원) 별도자료의 조문비교가 저희가 낸 것임.

○ (박능후 위원장) 이게 지난 번 제안을 했던 수정(안)의 내용이라는

말씀이시고, 실무진에서는 어제 저녁에 온 것이라고 했음.

○ (간사 류근혁) 어제 저녁에 보내주셨음.

○ (박능후 위원장) 어제 저녁에 온 것은 아직 공식적으로 회의석상에서 발언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안)으로 담지 않았다는 것으로 파악이 됨.

○ (이찬진 위원) 이것 또한 저희가 공식적으로 제기한 적이 없음. 여기 제안내용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 자체도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음. 그런데 그때 급히 타자를 쳐서 문자로 보내드린 그 정도 내용에도 이런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님.

○ (박능후 위원장) 별도자료는 본인이 제안했던 수정(안) 내용이라는 말씀이신지.

○ (이찬진 위원) 네.

○ (박능후 위원장) 이것으로 수정(안)으로 갈음하겠음.

○ (윤경식 위원) 이찬진 위원께서 제안한 내용 중 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표현은 모호함.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려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제안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보여 짐.

○ (이찬진 위원) 명확하게 하는 것은 복지부에서 준비하시면 됨. 예시로 한 부분이고 이 정도라도 해서 재계나 이런 부분 우려들을 최대한 불식시켜 드리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하되 원칙은 훼손하지 말자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임. 이 부분의 구체적인 기준을 통과시키는 게 어려우면 그 부분에 관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것을

수치나 정량적으로 넣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음. 정량적인 부분과 정성적인 부분이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이것 또한 협치 거버넌스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할 때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 10%룰에 적용되는 회사들의 경우 6개월 동안에 차익을 반환해야 되는 리스크가 발생하고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언제까지 계획해서 구속되는지에 관한 부분을 감수하고 결정하는 부분이어서 그 결정할 때 그런 것을 감수하고도 협치 거버넌스는 결정해야 된다고 할 때 집행하라는 것임. 이 부분에 관한 자기구속 효과는 클 것이라고 보여 짐. 이 정도 수준으로라도 하면 정부 원안하고 별 차이가 없는 효과가 있되 원칙은 훼손하지 않는 이 정도 수준으로도 아주 엄격하게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를 거의 하기 어려운 수준이지만 이 정도라도 하는 것이 어떠한지 제안을 드리는 것임.

○ (김성주 위원) 복지부의 쟁점별 검토 자료가 있고 여기에 반영되지 않은 이찬진 위원님의 다른 자료가 있음. 복지부가 정리한 내용은 이찬진 위원님이 제안한 주주권행사 범위에 관련된 부분에서 제안 내용 마지막에 ‘그 밖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주주권행사’라고 그 뒤에도 그렇게 정했음. 그런데 이 내용이 아니고 이찬진 위원님은 더 축소된 의견으로 즉,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하여 행사하자라고 구체적인 조문을 제시하였는데 실제 의견은 새로 준비한 내용으로 가는 게 맞다는 뜻인지.

○ (이찬진 위원) ‘그 밖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한 의결로 정한 주주권행사’ 이렇게 넣어버리면 주주권행사를 막는 결과가 됨. 원칙적

으로 못 하게 하는 것임. 이 부분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임. 이 부분은 있으면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도 원천적으로 예외적으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만 들어가는 식이 됨. 원래 수정(안)을 냈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허용되는 건데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실제 엄격하게 적용해서 운용하자라는 제안으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주주권행사는 어렵고 오히려 부결됐을 경우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원칙을 훼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됨.

○ (김성주 위원) 복지부 실무자의 답변이 좋겠음. ‘그밖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주주권행사’가 이찬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주주권행사를 막는 의미의 조문인지.

○ (간사 류근혁) 그렇지 않다고 생각함. 모든 주주권행사를 막고자 이렇게 만든 부분은 아니고 다만, 분명히 이렇게 제안을 하신 것으로 회의 끝나고 정리를 했는데 지금 다른 의견을 주시니 두 개를 같이 보는 것이고, 인쇄된 책자형태의 의미는 일단은 안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경우 최상위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의결로 거쳐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자라는 취지임. 두 번째 이찬진 위원님께서 주신 부분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열어놓은 것임. 열어놓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이렇게 된 경우 그 하위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것들임. 두 개의 차이는 기금운용위원회 차원에서 허용이 됐는지 여부에 대한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음.

○ (최규완 위원) 이런 문제가 되는 기업들이 발생했을 때 두 개의 차

이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로 되는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인지, 최종적으로 결정은 어디서 하는 것인지.

○ (간사 류근혁) 책자는 기금운용위원회 의결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이찬진 위원님께서 주신 부분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어떻게 할지 결정하여 진행하는 것임.

○ (최규완 위원)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지.

○ (간사 류근혁) 상당히 크다고 보여 짐.

○ (박능후 위원장) 쟁점을 정리하면, 원칙적으로 경영참여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기금운용위원회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든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경영참여를 허용할 것이냐 아니면 원칙적으로 허용을 하고 허용을 하되 경영참여를 할 경우 기금운용위원회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든 결정하는 그 차이임. 원칙적 금지, 원칙적 허용 그것을 먼저 가닥을 짓고 나면 예외적으로 들어간 것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할 것인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할 것인지 두 가지로 나눠서 하면 될 것 같음.

○ (이상철 위원) 애초의 정부(안)은 없어진 것 같음.

○ (박능후 위원장) 원칙적으로 금지가 들어가면 정부(안)대로 되는 것임.

○ (이상철 위원) 정부(안)에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할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없음. 그것까지 같이 결정을 하면 정부(안)하고 달라지는 것 같음.

○ (이경상 위원) 정부(안)대로 제반여건 구비된 후 방안검토 원안을 그대로 두고 3가지 옵션 중에 하면 될 것 같음.

○ (황병관 위원) 이찬진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은 상정이 된 것이고, 수정(안)부터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임.

○ (박능후 위원장) 수정(안)을 간결하게 이찬진 위원님께서 한 가지로 선택해 주시고, 원칙적 허용 그리고 그 허용된 것을 경영참여를 결정할 때 주주권행사 할 때 어디서 결정하시기를 바라는 것인지.

○ (이찬진 위원)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봄.

○ (박능후 위원장) 수정(안)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허용됐을 경우 그 결정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한다에 대해 의결을 해 보시기 바람.

○ (최규완 위원) ‘19년도에 ‘의결권지침 등 활용하여 일반원칙을 마련하고 공개’한다고 했는데 정부(안)은 당초에 현재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떤 제반여건이 마련되면 내년에 하겠다는 의도로 비춰지는데 그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셔야 올해 금지할지 허용할지 의사결정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음.

○ (간사 류근혁) 경영참여에 대해서는「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 해당 주주권이라고 되어 있음. 현재 미 시행이지만 ‘경영참여 해당사항으로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 이행방안 마련’이라고 당초 초안에 되어 있음.

○ (최규완 위원) 민감한 사안인데 이것에 대해 사용자 측에서도 사외이사나 경영권에 직접 참여하는 문제가 제일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당장 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이 정부(안)인 것 같음. 노동계 측은

당장 실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느껴짐. 정부가 이렇게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를 지속적으로 어떤 제반여건이 되면 하려는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음.

○ (박능후 위원장) 제반여건이 구비된다는 것을 전제로 정부 의도에 분명히 담겨져 있음.

○ (이경상 위원)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의결권 주주권행사에 한해서는 사외선임에 대한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권한이 너무 커진다, 지난번 의결한 내용은 종전까지만 해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주로 다하고 본부가 하고 의결권 전문위원회는 힘든 경우에 전문적인 사항을 위임을 해준 경우에 받아서 했었음. 그런데 지난번 개정이 되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판단을 해서 필요한 경우는 주총에 들어온 그런 안건을 달라고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도록 이런 구조로 바뀌었음. 굉장히 크게 범위나 권한이 확대됐고 조직도 확대가 되고 다 강화가 됐는데 이번에 경영참여 부분까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가져가 버리게 된다면 법적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는 특정한 전문위원회가 위탁받아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될 것 같음. 쟁점이 되거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권한을 확대하는 게 아닌지 지금 단계에서는 좀 더 불필요한 논란을 너무 집중시켜 스튜어드십 코드 자체에 대한 어떤 전체 범위를 흐리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음.

○ (이상철 위원) ‘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조정하든지 간에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과연 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큰 것을 할 수 있을 만한 지금의 구조에서 역량이 되는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닌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상시적인 기구도 아니고 거기에 굉장히 인력이 많아서 분석할 수 있는 기구도 아니고 이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현재로써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드림.

○ (조흥식 위원) 경제 측이든, 정부 측이든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지난번 KAL 한진 그것을 국민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코드라는 것은 현재 법이 아니고 세계 인권선언 같은 선언적 것임. 법규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면 곤란할 것 같음. 조문이라는 것은 이런 코드가 만들어지는 최소한의 규정을 가이드라인으로 넣어놨다고 봄. 정부에서도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는 제반여건 구비된 후에 앞으로 해나가겠다 한다면 국가적으로 볼 때라든지 발전을 해나가는 방향이 아닌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음. 규제를 막겠다는 것보다도 코드를 만들자는 그렇게 해야만 기업도 더 잘 될 것임. 편협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기업이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본다면 이찬진 변호사님의 그것은 규제적인 냄새가 강함. 정부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고 만든 것이 수정(안) 맞는지.

○ (간사 류근혁) 다시 정리하겠음. 1번 주주권행사 범위에서 안건내용과 제안내용이 책자로 있음. 제안내용은 이찬진 위원께서 제안을 하셨던 내용인데 본인의 제안내용과 다르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안건내용과 여기에 있는 제안내용으로 대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음.

○ (조흥식 위원) 여기 나와 있는 조문 비교라는 게 위에 있는 제안내용을 정부가 좀 더 그 내용을 반영한 것이 아닌지.

○ (간사 류근혁) 네, 그런데 여기 이 제안내용은 이찬진 위원께서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라고 얘기를 했음. 왼쪽이 저희 제안이고 오른쪽은 아님.

○ (김성주 위원) 복지부는 이찬진 위원 주장을 생각하고 오른쪽 제안내용을 담았는데 이찬진 위원은 이게 아니고 이것을 참고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임.

○ (조흥식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것하고 이 3개를 비교하면 되겠음. 그러려면 이 최종(안)에 대한 것을 일단 상정이 된 것이라고 보고 1(안), 2(안), 3(안)으로 보고, 2(안), 3(안)이 안 된다면 정부 초기(안)대로 하면 될 것임. 코드에서의 원칙은 항상 선언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높을 수가 있음. 여기에 원칙적인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으로 더 넓혀 놓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오는 우리가 (안) 만든 기금운용위원회 운용규정이라든지 이것은 그것에 따라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조금은 이런 측면에서 원칙적인 것은 범위를 넓혀 놓고 다음에 뒤에 있는 규정 같은 것은 세밀히 보고 해서 시간을 좀 줄여나가는 것

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듦. 지금 원칙과 관련해서는 딱 하나인 것 같음. 그 뒤에도 (원칙5)도 나오는데 미리 안 보고 이 자리에서 보니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음. 그래도 하나씩 하나씩 축조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음.

○ (박능후 위원장) 지난번 5차에서 사안별로 표결할까 했었는데 몇몇 위원님들이 기금운용위원회가 표결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능한 합의를 보는 게 좋겠다고 하셔서 쟁점별로 표결에 붙이지 않고 계속 의견을 모으고 있음. 쟁점을 정리한 바와 같이 경영참여 주주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할 것인지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인지, 원칙적으로 인정할 경우에도 또 원칙적으로 금지할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들어갈 때 어디에서 결정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어느 경우를 취하든 결과는 비슷함. 다만, 사회적으로 주는 파급효과나 인상 시그널은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자는 그런 뜻인 것 같음.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인지, 원칙적으로 허용할 것인지 그 안만 딱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람.

○ (최규완 위원) 금지라고 표현을 하시니 사회적으로 또 파장이 있을 것 같고 뉘앙스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음. 개인적으로는 제반여건 마련 후 단계적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한다, 이게 첫 번째 (안)의 느낌이고, 두 번째는 경영참여 주주권을 허용하되 어느 정도 위험이 인정되는 기업의 경우에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통해서 행사한다, 이렇게 두 가지인 것 같음.

○ (박능후 위원장) 그것도 적절할 것 같음. 쟁점1번을 두 가지로 정리

하겠음. 첫 번째는 경영참여권 주주권행사는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두 번째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할 시에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따른다,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얘기하시기 바람.

○ (이경상 위원) 이행방안 마련 이 자체도 부담스러움. 처음 '방안을 검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단계적으로 짚어보고 가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것은 경영참여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니 세부적으로 하는 것인지 궁금함.

○ (간사 류근혁) 이 자료에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쓴 것은 없음.

○ (문미란 위원)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는 제반여건 구비된 후 이행방안 마련' 이렇게 되어 있음.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는 제반여건 구비된 후 이행방안 마련' 이렇게 되어 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반여건만 마련되면 경영참여 하는 것임. 로드맵에도 보면 곧 할 것 같음. 법률도 개정하려고 논의 중이고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면서 국민적인 인식이나 여론에서 마치 대단한 제한을 두고 원칙을 훼손하면서 하는 것처럼 할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고 원칙은 원칙대로 선언하고 행사방법, 결국은 오퍼레이션에서는 비슷할 것이라고 한다면 선언적 의미를 가지는 코드를 제정함에 있어 굳이 제한을 앞세우고 원칙을 뒤로 밀리는 그런 식의 제정방법은 좀 특이하다는 생각을 갖게 됨. 원칙적으로 허용으로 가고 그것이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 이행방안을 마련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큰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위

원회 결정을 통해서 행사한다는 정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지 원칙적으로 허용으로 선언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듦.

○ (박능후 위원장) 문미란 위원님 말씀은 수정(안)을 동의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겠음.

○ (김성주 위원) 이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기를 원하는지.

○ (이찬진 위원) 합의가 어려우면 표결을 원하시는 것 같음. 가입자들 노조 쪽은 그러신 것 같음.

○ (유재길 위원) 또 다른 (안)을 내기가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주주권 행사 범위에 대해서 1(안), 2(안)의 설명을 들었고 1(안)이 부결되면 경영참여까지 확대된다고 이해하고 왔다가 지금 수정(안)이 나와서 그 수정(안) 자체도 전문위원회나 기금운용위원회가 적절한 시기에 소집이 되어 그것을 대응을 할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음. 민주노총에서는 경영참여 해당 주주권을 전면 행사하게끔 해야 된다는 주장을 굽히지는 못하겠음. 이 문제가 나오는 것도 삼성물산이나 대한항공이나 오너 일가에 대한 경제적 가치훼손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개입하지 못하는 이 (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 못하겠음. 수정(안)이 부결되고 정부(안)도 부결되면 전면 허용하는 제3(안)이 자동 성안이 되어 또 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임. 그렇지 않으면 수정(안)부터 표결을 순차적으로 하는것이 빨리 끝내는 원활한 진행인 것 같음.

○ (김성주 위원) 연금공단 측에서도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입장에서 의견을 드렸으면 좋겠음. 기금운용위원회 거버넌스가

상당히 좋은 구조라고 생각함. 정부 측에서도 참여하고 연금공단도 들어와 있고, 경제계, 노조, 가입자 대표들이 들어와 서로 다른 이해와 생각들을 충분히 논의하면서 합의하는 구조는 갖춰져 있다고 봄. 개인적인 생각으로 소수의견을 충분히 개진했기 때문에 또 그것에 대해서 각 단체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서로 서로 생각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회의록에도 남기고 가급적이면 의사결정은 표결을 안 하는 것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임. 만약에 이번에 표결하면 모든 안건이 나올 때마다 계속 표결을 하게 되면 이 합의구조는 깨지는 것임. 그런 면에서 민주노총 측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충분히 의견개진을 하고 합의하여 이 안건을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림.

○ (이상철 위원) 이사장님 의견에 일견 동의함. 다만, 저희 의견은 사실 100% 일치하는 (안)은 없는데 정부(안)에 동의를 하고 이행방안 마련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음. 그 부분은 의견으로 달아주시고 정부(안)에 동의함.

○ (박능후 위원장) 김성주 이사장님이 가능한 표결하지 말고 합의를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안)인 것 같음. 구체적으로 숫자를 드러내서 나타내기보다 대체로 어떤 의견인지 다들 짐작하실 것 같음. 원칙적 금지인지, 허용인지 결과가 비슷한데 조금씩 양보하여 정부에서 제안됐던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는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에 이행방안을 마련한다, 이 정도로 뜻을 모으면 어떨까 싶음. 그리고

기관을 대표해서 오신 분들 말씀들은 충분히 부기를 해서 그런 검토가 있었다는 것을 회의록에 남기고 하면 어떨까 싶음.

○ (김성주 위원) 동의함.

○ (이찬진 위원) 원안에 찬성하는 입장이 다수인지는 모르겠음. 수정(안)이 확실한 소수인지도 잘 모르겠음. 이 부분 원안을 수용하는 형태로 합의 가능하신지.

○ (유재길 위원) 죄송하지만 개인적으로 의견을 표현할 수 없는 것이고, 적절한 회의 구조에서 입장을 정하여 나온 것이라 그 복지부(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끌지는 못하겠음.

○ (황병관 위원) 회의자료 별지에도 있음. 이찬진 위원이 긴급하게 제안한 것이 수정 2(안)이고, 이것 하고 수정 1(안), 2(안)이 다 없는 것으로 하고 그냥 의견으로만 다루고 정부(안)을 하자는 것이라면 지난번 회의에서 끝을 내야 했음. 꼭 표결보다 합의하는 것에 대해 100% 동의함. 정부(안)대로 갈 것 같으면 이런 회의도 필요 없고 수정(안)을 참고로만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맞지 않음.

○ (정광호 위원) 한국노총에서 공식제안을 함. 이찬진 위원 수정(안)이 원래 정부가 제안내용으로 정리된 부분들은 사실상 의사소통이 잘못됐다는 것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그 허용의 범위를 극히 제한해서 수탁자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부분들로 해서 합의를 시도해 보고 안 되면 표결했으면 좋겠음. 수정(안)에 대한 표결하고 부결됐을 경우 정부(안)에 대한 표결을 함.

○ (유재길 위원) 동의함. 문제는 수정(안)에 표결을 하고 부결되면 정

부(안)에 대해 표결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제안하는 경영참여의 주주권행사를 하는 그 설명자 2(안)을 제한할 수 있는 길이 사라지는 것임. 가능한 표결에 들어가면 수정(안)을 폐기하고 경영참여 해당 주주권까지 할 것인지 아니면 전면 허용할 것인지를 1(안), 2(안)으로 표결할 것을 주장하는 것임. 그렇지 않으면 이찬진 위원님 지금 제안한 이 (안)이 부결되면 저희가 전면 허용하자는 이 (안)까지도 제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임. 이찬진 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다소 불만스럽지만 이 정도에 동의하려면 저도 조직 내 들어가서 설득을 하겠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면 제가 굉장히 곤란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음.

○ (김성주 위원) 지난번 회의 때 원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다가 수정의견이 있었고 그 수정의견에 대해서 표결로 정하기보다는 절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문구를 가지고 논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오늘로 연기해서 다시 연 것임. 그런데 오늘 다시 논의를 하니 그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서로 간에 동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서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임. 그런 상태에서, 수정(안)으로 절충해서 서로 간에 합의할 수 있으면 합의해 볼 텐데 그게 안 되면 남은 것은 표결인데 표결방식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임. 이미 위원들께서 의견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의견 말씀하신 속에 주장은 다 담겨있음. 굳이 숫자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는지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임. 입장들은 충분히 개진됐고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각 소속단체의 입장

이기 때문에 변경 불가능하다고 봄. 그것은 표결을 해도 어떤 결론을 내려도 각 단체들은 그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임. 그러나 기금운용위원회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의사결정기구로 가려면 표결보다는 서로 합의하고 가면 좋겠다는 그런 원칙을 말씀드리는 것임.

○ (박능후 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합의(안)을 내기는 힘들 것으로 파악이 됨. 왜냐하면 각 단체에서 각 단체의 의견과 반하는 의사에 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민노총의 유재길 위원님이 (안)을 제시했던 제일 마지막에 재수정(안)으로 생각이 드는데 경영참여 주주권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것인지, 제한할 것인지 그 두 (안)을 두고 먼저 표결한 뒤 다음 단계를 논의해야 될 것 같음.

○ (간사 류근혁) 표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음. 지금 표결을 하게 되면 회의장에서 나가시면 표결에 참여하실 수 없고 참석 위원님들 중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가 있음. 거수를 하거나 명패를 세우거나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음.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첫 번째 안건은 경영참여 부분 쟁점1에 대한 내용임. 먼저 ‘경영참여 주주권을 전면 허용한다’와 ‘전면 허용하지 않고 제한한다’는 부분에 대한 표결이 맞으신지, 유재길 위원님, 맞으신지.

○ (유재길 위원) 네.

○ (간사 류근혁) 유재길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제안하신 부분임.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표결을 하고 두 번째 (안)은 이찬진 위원님께서 주신 이 안건에 대한 표결이 될 것임. 세 번째 (안)은 정부 초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시게 됨. 다 부결됐을 때를 상정해서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정부 초안임. 먼저 경영참여 주주권을 전면 허용한다에 대한 표결이 되겠음.

○ (김성주 위원) 표결하기로 하신 것인지.

○ (정광호 위원) 동의는 들어온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재청이나 동의 성립이 될 요건을 확인하셨는지.

○ (박능후 위원장)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음. 이 안건에 대해 표결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음. 재청이 있는지.

○ (황병관 위원) 표결 전에 5분 정도 정회를 하고 생각이 같은 분들 하고 의논할 시간을 잠깐하고 난 후에 더 좋은 절충(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합의가 될 수 있지 않겠는지.

○ (최규완 위원) 위원장님, 지금 대부분의 의사를 말씀했음. 그리고 말씀 안 하신 분들이 있음. 이 분들의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고 다음에 위원장님이 이게 다수의 의견인 것 같다는 (안)으로 말씀하시면 그게 표결을 갈음한 것이고 또 위원회의 이런 선례를 안 남길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함.

○ (박능후 위원장) 좋은 제안인 것 같음. 지금 표결에 대해서 동의가 있었고 재청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좀 더 의견을 더 들어보자는 의견과 정회를 요구한 두 (안)이 있었는데 먼저 발언하지 않으신 분들도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대략의 수치를 한 번 보고 짐작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음.

○ (최정표 위원) 어떤 (안)이든 큰 차이는 없다고 봄. 그런데 나오신

분들이 단체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 만장일치는 어려울 것 같아 5분 정회해서 의견을 듣고 표결을 하든지, 다시 논의하는 것 그게 좀 원만한 해결책이 아닌지 기회를 갖는 게 어떤가 싶음.

○ (이재원 위원) 똑같은 결론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부분들이 앞으로 확대 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의 차이를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음. 그래서 경영참여 미 해당 주주권부터 우선 도입하자는 얘기가 축소적으로 가는 건데 이것만 있으면 지금 그런 부분들이 될 수가 있겠지만 뒤에 보면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에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포괄적으로 열어놓은 부분이 있다고 봄. 정부(안)이 그래도 보기에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듦.

○ (조홍식 위원) 어느 정도 합의를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음. 좀 더 이야기를 크게 차이 나는 것이 코드를 만드는 자체부터가 앞으로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가자는 생각은 다 있는데 그게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에 하자는 것을 생각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이찬진 위원이 내세운 것이 뒤에 여러 가지 규정들도 있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원칙에는 그런 것이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임. 정부가 현재 만든 (안)을 그대로 하되 원칙에서는 조금 더 전향적인 것들이 한 구절 정도 더 들어가면 이 코드 자체는 우리가 선언이라고 생각하고 다 같이 좋은 방향으로 합의하는 것에 대해 반대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함. (원칙4)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토론해서 기타 정도

하나를 넣고 그다음 다 전반적으로 정부의 (안)을 단계적으로 가는 정도로 해 놓으면 서로가 합의를 구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원칙은 조금 더 강하게 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절충적인 생각을 해 봤음.

○ (박능후 위원장) 5분 정도 정회를 하고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음. 5분간 정회를 선언함.

○ (최경일 국민연금재정과장)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음. 기자들이 많이 있어 정회를 하시더라도 화장실만 잠깐 다녀오시기 바람.

○ (박능후 위원장) 정회해서 나갔다 하지 마시고 갔다 오시기 바람.

○ (박능후 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음.

○ (이찬진 위원) 가입자 쪽 몇 분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좀 했고, 주주권행사 범위와 관련하여 쟁점별 검토 자료 제안내용과 관련돼서 관련 조문 비교 중 두 개 정도만 정하고 절충을 할 수 있는지, (원칙4)에서 '그 밖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주주권행사' 지침에서 수탁자책임활동의 내용에서 '그 밖에 사안 또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안' 이런 상징적인 정도 수준으로 수정(안)을 변경하여 이 (안)이 합의통과가 가능하다면 가입자 쪽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게 합의가 된다면 저희는 기존의, 민노총의 마지막 제안하신 것도 철회하시는 것임.

○ (유재길 위원) 네.

○ (이찬진 위원) 합의해서 통과가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정리했으면 함.

○ (박능후 위원장) 원래 제안된 정부(안)을 기본으로 하되 기금운용위

원회에서 의결할 경우에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둔다로 정리하면 되는지.

○ (이찬진 위원) 네.

○ (박능후 위원장)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이상철 위원) 가입자 쪽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가입자대표로 왔음.

○ (이찬진 위원) 죄송함. 근로자를 대표하는 단체 위원들이라고 하겠음.

○ (이상철 위원) 반대임. 정부(안)대로 하는 '제반여건 구비된 후 이행방안 마련' 이 문구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정부(안)에 대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거기다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주주권행사 자체가 들어간다면 기업들이 더 부담스러워할 수 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별하게 부담되는 것은 없지만 이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 자체가 기업에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임.

○ (이찬진 위원) 합의가 안 된다면 정부(안)에 두 가지만 수정(안)을 변경해서 하겠음. 그것을 기준으로 보팅을 해 주시면 좋겠음.

○ (박능후 위원장) 재재수정(안)을 정부(안)에 넣는 것인지.

○ (이찬진 위원) 두 개만 넣는 것임.

○ (문미란 위원) 합의를 위해 내놓은 수정(안)이니 조금 더 논의를 하여 합의가 도저히 안 되면 그때 재재수정(안) 내놓은 것으로 표결을 하고 합의노력을 조금 더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박능후 위원장) 잠깐 조금 더 논의를 해 보시기 바람. 수정(안)이 재수정(안) 된 것은 정부(안)에다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할 경

우에 주주권행사 할 수 있는 것으로 추가하자는 것임.

○ (이경상 위원) ‘이사회 구성·운영, 이사·감사선임 등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이렇게 되어 있음. 이것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주주권행사든 해 나가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인데 주주권행사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이 듦.

○ (간사 류근혁) 이사회 구성·운영 가이드라인 부분은 구성의 다양성, 모든 부분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 기초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임. 구체적으로 이사는 누구로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전혀 아님. 경영참여에 해당되는 주주권행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봐주면 되겠음.

○ (윤경식 위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경영권참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발언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함. 그렇다면 지금 이찬진 위원이 수정제안 한것도 그런 내용이 들어간 것 같은데 기금운용위원회가 경영권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든 할 수 있다고 정부 원안에 많이 얘기를 하셔서 두 가지만 선언적으로 넣어달라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고려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경영권참여행사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간사 류근혁)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과 관련된 최상위 의사결정구조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로 경영참여에 대한 주주권행사를 해야 되겠다고 의결해 주시면 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그렇게 하는 경우 경영참여를 공시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공시결과에 따라 현행 법령상의 제약 부분들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을 했다 하더라도 피할 수는 없음. 다만, 주주권행사에 대해서 모든 최고 의사결정 기준은 기금운용위원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관련된 어떠한 부분들도 의결을 하고 시행을 기금운용본부에 명령을 할 수 있음.

○ (정광호 위원) 5가지 부분 전부 다 부딪힐 문제인 것 같은데 최소 국민연금 관련하여 가장 국민적 관심이 되고 있는 부분이 소위 오너와 관련된 문제들임. 이 부분에 대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상징적으로라도 이 부분을 넣어서 국민연금이 자기 사회적 역할을 최소한 한다는 시그널을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 재재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양보해 주셨으면 좋겠음. 건건 마다 표결해서 쟁점을 양산하는 것보다 첫 안건인 만큼 합의해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음.

○ (조흥식 위원)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자는 것에 대해 들어가는 것은 찬성임. 4조 뒤에 있는 것은 이 조항은 상징적인 의미로 원칙적인 의미로만 얘기를 해 놓고 그 뒤의 부분은 첫해 해 나가는 마당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 조금 우리가 합의의 마음에서 볼 때는 (원칙4)에 의결권행사 맨 밑에 기타 이 정도 넣는 것은 어느 정도 절충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또 가입자 쪽에서는 뒷부분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4조에 있음. 그 부분의 구체적으로 되는 것은 절충적 의미에서 원칙에만 집어넣자는 그 정도만

이야기 드리고 싶음.

○ (이경상 위원) 뭐든지 하나가 들어가게 되면 보는 사람에 따라, 실제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게 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바를 직접 시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위임장 대결도 가능하고 모든 게 다 가능해지는 그런 구조가 됨. 결국 기금운용위원회가 굉장히 많은 부담감을, 뭘 할 수 없는 불확실성만 양산하게 되는 불안감만 키우게 되는 불필요한 논쟁만 불러일으킬 것 같음. 지금 당장 할 필요도 없는데, 굳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도 굳이 못을 박아 불필요하게 불안감을 키울 필요가 있는지 하는 얘기임. 실익이 없다는 것임.

○ (문미란 위원)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 하겠다는 것이 원칙이고 (원칙4)에 기금운용위원회 의결로 정한다고 하지 않더라도 현재 기금운용위원회가 할 수 있는 사항임. 그래서 현재 없는 제도를 넣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의미인데 굉장히 큰 폭을 줄여서 합의를 하기 위해서 (안)으로 내놓은 것임.

○ (이경상 위원) 어떻게 보면 더 넓어졌음. 위임장 대결도 가능해지는 그런 내용이 됨. 이 의결로 지금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문구로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이 불안하게 된다는 것임.

○ (문미란 위원) 현재 가능한 것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고 하면서 제한을 해 버리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납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 (이경상 위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임.

○ (문미란 위원) 그것을 두지 않고 열거해서 4가지 사항만 원칙에 집어넣는 것 자체가 제한하는 것임.

○ (이상철 위원) 합의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는 것임. 정부(안) 자체도 마지막 문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것임. 이 문구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기업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임. 합의라는 게 사실은 양보를 하라는 의미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양보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만장일치로 합의하기는 힘들 것 같음. 회의진행을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의견을 듣고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음.

○ (최규완 위원)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외식업중앙회 단체에서 나왔고 대학에 재직하고 있음. 아마 중립적인 사람일 것 같은데 기금운용위원회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 모두가 모여 있는 단체라고 생각함. 그리고 정부는 전체 사회의 복리나 후생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 조항 없이 국민연금 자체가 이런 주주권행사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국민연금의 권한이 센 것임. 사용자의 의견을 들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함. 그런 면에서 기금운용위원회로 결정을 하는 것은 중간자적 입장에서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임. 이 기금운용위원회가 1년에 몇 개나 의결을 할 수 있을지. 대한한공이나 지난번 같이 삼성이나 이런 사태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업들이 이 문구 하나에 크게 피해를 보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음. 충분히 시그널링 임팩트는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임.

○ (최정표 위원) 기금운용위원회 의결로 정한다는 것은 정하면 되는 사항을 선언적으로 넣는 것에 불과함. 여기까지도 합의하기가 어려워지는데 주주권행사 안건을 의결로 할 때는 이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임. 이 정도는 어차피 할 수 있는 것인데 선언적으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해서 한다는 정도의 조항을 넣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임. 정부(안)에다가 여기 넣은 이 (안)으로 합의를 하여 결정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음.

○ (박능후 위원장) 정회를 거치면서 조금 절충(안)이 나온 것 같음. 절충(안)이 나왔는데 사용자 측에서 정말 당연한 것을 넣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일 것 같기는 함. 그런데 당연한 의결을 이 정도 하는 것이 지난번 5차 회의가 결론을 못 보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뭔가 변화는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변화 중에서는 이 요건을 안 넣더라도 이미 할 수 있는 것을 드러내 놓는 정도인데 그 정도 선에서 같이 다 합의를 하면 어떨까 싶음. 사용자 측에서 양해를 하셨음 함.

○ (이상철 위원) 다수결이니 반대는 안 하는데 의견은 남겨주시기 바람.

○ (박능후 위원장) 의견 남기겠음. 표결하지 않고 사용자 측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부기를 하고 우려되는 바에 대해서 하겠음.

○ (김성주 위원) 가입자 단체 측에서 양보하셨고 사용자 단체 측에서도 같이 양보를 하셔서 무난히 타결된 것 같음.

○ (박능후 위원장) 쟁점1에 대해서는 요약을 하면 정부(안)을 기초로

하고 거기에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는 제반여건 구비된 후 이행방안을 마련하되 기금운용위원회 의결로 정할 경우 주주권행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겠음. 쟁점2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람.

○ (이상철 위원) 또 소수의견일 것 같음. 위탁운용사에 대한 의결권행사 위임에 대해서 찬성하고 다만, 위탁을 한다고 하면 스튜어드십 코드가 자율규범이고 위탁사에 자율권을 충분히 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음. 그래서 의결권 불통일 행사 문제는 현행대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듦. 위임에 대해 전반적으로 찬성임.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는 것 같은데 현행대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의견 정도로 달아주셨으면 좋겠음.

○ (박능후 위원장) 위탁운용 하는 것을 기본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시고 의결권 불통일 행사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보완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대로 하자는 말씀이신지.

○ (이상철 위원) 안건에 대해서는 아니고 의견정도임.

○ (박능후 위원장) 알겠음.

○ (이상철 위원) 지금 기업에서 거부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 (최경일 국민연금재정과장) 네.

○ (이상철 위원) 연금에서 불통일일 경우 다 가져와서 하겠다는 식이 아닌지.

○ (최경일 국민연금재정과장) 지금도 기업에서 거부하면 그 지분은 없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 (이상철 위원) 네. 복지부에서 생각하는 그런 불통일이 있을 경우 가져와서 의결권을 기금운용본부에서 행사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닌지.

○ (최경일 국민연금재정과장) 네.

○ (이찬진 위원) 이 부분에 관한 자료도 그 당시에는 안건으로 정식으로 채택되었던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 한두 분이 말씀하는 과정에서 이런 방향, 위탁운용사의 이해상충 문제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되어 있어서 의결권위임은 적절하지 않다는 정도 의견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을 구체화 하는 안건은 제안된 게 없어 별도의 자료로 준비한 게 그런 내용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몇 개 단체들이 의견을 정리한 것임. 제가 이 논의를 계속 피곤하게 하는 사람처럼 되어 죄송함. 추가제안이라고 되어 있는 별도자료 부분임. 위탁운용사에 대한 의결권행사 위임은 위임인가 위탁운용사의 이해상충방지 정책 등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문제하고 의결권 불통일 행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자는 게 제안내용 정도의 기조임. 보완방안은 한마디로 원칙적으로 정부(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는 즉시 위탁운용사에 대해 의결권을 위임하는 기조로 되어 있다면 점진적으로, 원칙적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의결권위임을 하자라는 부분에 관한 (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음. 시행 1년 후 정도로 점진적으로 확대하자는

그런 보완방안이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의결을 통해 위원회가 승인하는 연도별 점진적인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계획이나 이런 로드맵 같은 것을 만들자는 것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해서 성실하게 운영하는 위탁운용사에게 자격을 부여하되 위탁운용사 중에 점진적으로 확대할 경우 위원회가 심의해서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업체로 지정한 업체한테 주는 것으로 하고 위임한 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위임한 의결권을 회수하는 정도의 보완방안 정도로 하면 어떠한지를 제안한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음. 나머지 조항은 기술적인 부분이라 참고로 보면 될 것 같음. 이 부분에 관해 수정(안)을 정식으로 제기하겠음. 동의해 주실 분 있으시면 동의해 주시기 바람.

○ (유재길 위원) 수정(안)에 동의하면서 당초의 의결권 회수조항만 있다면 반대를 표명하려고 했는데 의결권위임 결정이나 전문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조항까지 포함한다면 수정(안)에 동의하겠음. 나머지 답은 다음에 발언하겠음.

○ (박능후 위원장) 수정(안)에 재청하신다는 말씀이신지.

○ (유재길 위원) 네.

○ (정광호 위원) 법령개정이 얼마 정도 걸리는지.

○ (간사 류근혁)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시행령을 법제처 심사 의뢰한 상태로 알고 있고 그러면 길어야 한 달 반 이내에 법령개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짐.

○ (윤경식 위원) 위탁사들에게 위임하는 부분은 이찬진 위원의 말씀

이 타당하다고 보여 짐. 로드맵을 만들어 장기적인 방향은 위탁받은 운용사들이 역량을 갖추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임.

○ (문미란 위원) 수정(안)에 동의함.

○ (김성주 위원) 이찬진 위원님한테 질문임. 별도자료 제안내용이 맞다는 것인지.

○ (이수철 기금운용본부장 직무대리) 위원장님, 기금운용본부장 직무대리임. 발언할 자리는 아닌데 하나 질문이 있음. 지금 이찬진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신 부분에 의결권의 위임과 회수결정이 있는데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음. A운용사에 의결권을 위탁을 했을 때 A운용사가 B회사에 대한 의결권행사 할 때 B회사와 A운용사가 이해상충 관계에 있어 의결권행사를 기금운용본부가 해야 되겠다고 A운용사 자체가 이해상충이 있다고 밝힐 수도 있음. 그 경우 위임을 회수하는 것임. A운용사 자체에 전체로 위임했던 의결권을 회수하는 케이스만을 얘기하는 것임.

○ (이찬진 위원) 그 부분 전자에 말씀하신 것은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에 들어가야 될 컴플리트 부분을 아직 구체적으로 규정된 게 없어서 그런 경우에도 회수하는 조항들을 넣어 차분히 하자는 그런 취지임.

○ (이수철 기금운용본부장 직무대리) 그 부분은 추후에 절차나 그런 부분을 만드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위임하고 아니면

회수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 (이찬진 위원) 가이드라인이라고 제가 제안한 것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임.

○ (박능후 위원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되 그 내용 안에 전체 위임과 부분 위임을 넣어달라는 이 말씀이신지.

○ (이찬진 위원) 컴플리트 관련된 부분은 다 걸러야 되는 부분이 있음.

○ (박능후 위원장) 알겠음. 요약을 하면 수정동의(안)은 위탁운용사에 대한 의결권행사 위임을 1년 후부터 점진적으로 여건이 구비된 후에 하자는 뜻으로 되는 것 같음.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나서 하자는 것인데 사실은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위임을 할 수 없음. 1년 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고 말을 않더라도 준비가 돼야 하는 것임.

○ (이찬진 위원) 경과기간을 두고 하자는 것임.

○ (정광호 위원) 법령이 개정되기도 전에 이 부분을 결정하는 것이.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면 지금 서두를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듦.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주권행사 관련하여 정부의 책임을 분산시키기 위한 이런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여러 가지 과정에서 정부가 계속 두드려 맞고 하니 이것을 오히려 이쪽으로 분산시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하는 그런 직업병적인 의심이 있음. 의결권행사 관련하여 기금운용본부도 계속 해야 되는데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키우는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1년 정도 준비와 능력을 키우고 위임에서 부작용이 뭔지 어떤 능력이 필요

한 것인지 들에 대한 준비기간은 필요하고 매뉴얼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기금운용본부 자체의 그런 능력 향상 기간도 필요한 측면에서 동의(안)이 매우 타당한 (안)이 아닌지 생각을 함.

○ (최규완 위원) 재무관리 하는 학자들이 많이 연구하는 부분이 기업지배구조임. 지배구조인데 광범위한 이해관계를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게 어느 특정기업을 얘기하긴 그렇지만 삼성이 투자자산운용사를 갖고 있음. 삼성이 A기업의 지분관계를 갖고 있고 A기업이 B기업에 투자를 하는 상황이 지분관계가 있을 수 있음. 삼성투신운용이 B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때 순환적인 문제가 항상 있음. 광범위하다는 게 1단계에서 어떤 특정 회사와 관련된 회사에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만 보지 말고 순환적인 이해관계를 확인하는 그런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함.

○ (유재길 위원) 이찬진 위원님이 수정(안)을 발의하신지 원망스러움. 저희들 회의체에서는 의결권위임 관련하여 명확하게 어떠한 수정(안)도 받지 않겠다고 결정을 하고 온 상태인데 이런 수정(안)에 반대도 못 하겠고 찬성도 못 하겠고 이런 상황임. 하여튼 저희 입장은 제가 책임지고 이 부분 수정(안)에 대해 조직 내 설득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의결권위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확고한 저희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수정(안)에 대해서는 논의사항을 지켜보고 이 수정(안)에 대해 처리결과에 따라 저희들 입장은 따로 내도록 그렇게 하겠음.

○ (이상철 위원) 민주노총에서 원망스럽다는데 저희도 원망스럽기는

마찬가지임. 연금의 시장지배력 자체가 기업의 너무 크기 때문에 위탁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게 의견이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할 때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가이드라인 만들고 다시 위원회에 올려 논의가 돼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바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질문을 드림.

○ (간사 류근혁)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 요청을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의결하기 전에 사전검토 할 시간은 있을 수 있음. 다만, 기금운용위원회 의결로 요청을 하셔야 하는 사항임. 1년 뒤에 행사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원래 안건에도 의결권행사 위임 부분에 대해서 '19년도에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위탁운용사 활용한 주주활동 확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내년 이 시점이 되면 시행된다는 이찬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시기상의 차이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림.

○ (김성주 위원) 그 조문은 없어도 되는지.

○ (간사 류근혁) 아님. 필요하면 넣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임. 다만, 초안에도 기술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 발언한 것임.

○ (박능후 위원장) 위탁운용사의 의결권행사 위임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을 분산시키는 것은 아니고 경제 주체들의 다양한 의견이 같이 합류해서 최종적 의사결정이 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시각임. 아무리 기금운용본부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경제 주체들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어 위탁운용사의 의결권행사를 위임하려는 것임. 그 경우에도 이해상충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의결권행사를 거둬들여서 본부에서 하겠다는 그런 뜻이었음. 지금 수

정제안을 요약하면 시행 1년 후 점진적 확대 일정한 준비가 되고 난 다음부터 시행하자는 뜻이라 타당한 말씀임. 1년이 구체적 수치인지는 의문이 있으나, 수정(안)을 받아들여서 원 제안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수정(안)대로 의결하면 어떨까 싶음.

○ (김성주 위원) (원칙1)에 대한 이찬진 위원의 제안내용 중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결정으로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보완방안 예시에 수탁자책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의결권위임 계획과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내용이 같은 것인지.

○ (이찬진 위원) 예시를 조문으로 정리한 것임. 이 부분이 정부(안)과 좀 다른 부분은 정부(안)은 원칙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가 되면 위탁운용사한테 의결권이 포괄적으로 위임되어지는 그런 로드맵 비슷하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개별적인 심사를 해서 가이드라인이나 일정에 맞춰서 한다는 것임. 또 하나는 그 부분의 주체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주식운용실이나 책임투자실의 백업을 받은 전문위원회가 이 부분을 검토해서 수권을 해 주는 그런 형태의 내용임.

○ (김성주 위원) (원칙1)에 대한 부분들은 위임과 회수에 대한 것을 언급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고, 다음 2조 5항에 들어있는 부분은 채택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포함돼서는 곤란할 것 같음.

○ (박능후 위원장) 수정(안)에 대한 의결내용은 시행 1년 후에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두 번째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난 다음 반드시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도록 이 정도로 수정(안)을 만들겠음.

○ (이찬진 위원)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만들고 위원회가 승인하는 형태로 저희가 했음.

○ (박능후 위원장) 다시 검토해서 승인하도록 함.

○ (김성주 위원) 그것을 지적하고 싶었음. 의결권위임 계획과 가이드라인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지적하고 싶었음.

○ (박능후 위원장) 그렇게 확정하여 수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음. 다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운용사에 대한 가점 부여 여부임. 의견 주시기 바람.

○ (이상철 위원)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 위임할 때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해소 차원에서 의결권행사 위임을 추진한다고 하였고, 스튜어드십 코드가 자율규범이고 이런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하면 자율적으로 위탁받은 기관에서 행할 수 있도록 지금 문제가 있으면 다시 철회하는 부분들이 있으니 일단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가점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가점 부여하면 자유롭게 하라 놓고 안 하면 페널티를 주겠다는 의미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점 부여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듦.

○ (윤경식 위원) 가점 부여하는 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음. 정부에서 만든 (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했을 때 실질적으로 자산운용사들의 여러 여건이나 구조로 봤을 때 그냥 단순하게 잘못하면 국민연금이 따라가서 결정하고 아무런 의사결정을 안 할 수도 있어

보여 짐.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노력을 해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는 측면에서 가점을 부여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그런데 이상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대의 단점도 있어 보이기는 함. 그래서 정부(안)을 한 번 가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봄.

○ (김성주 위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전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 우려와 불안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임. 충분히 도입 취지나 의도에 대해 설명하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안 해 본 것을 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다는 생각이 듦.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토론하면서 많이 해소돼 나가고 시행하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 잘 전제된다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영국 FRC를 방문했던 대화내용을 잠깐 소개할까 함. FRC가 쉽게 얘기하면 영국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제정·관리하는 기관임. 금감원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고 운용 자체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위원회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음. 처음에는 각 운용사들이 성의 있게 해오지 않았다고 함. 매년 정기적인 보고서를 냈는데 A4 한 장 정도의 아주 일반적인 언급만 해서 실제로 이 제도도입 취지가 잘 살지 못해서 그 후에 티어링 제도라고 자산운용사들을 등급을 매겨 1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난 다음 활성화되고 보고서도 구체화 됐다고 얘기를 함. 도입을 하겠다고 하는 긍정적 측면에서 주목한다면 자산운용사들도 이 의결권행사를 통해서 충

분히 자기역량도 강화하고 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해서 최소한 초기에는 연착륙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영국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림.

○ (조흥식 위원) 처음 도입을 하는 것이니 많이 확장되는 게 더 좋을 것 같음.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또 줄이는데 처음에는 한 번 확장하는 것이, 원안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듦.

○ (박능후 위원장) 쟁점이 작아 의견들이 활발하지 않음. 어떤 제도를 도입하고 다음 제도의 이행력을 담보하려면 뭔가 메커니즘이 있어야 되고 가점제도는 그런 취지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음. 다만, 초기에 가점의 비중이 너무 크지 않도록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통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음. 세 번째 쟁점도 가점을 부여하되 그 크기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차후 논의한다고 결정하면 어떨까 싶음. 그렇게 통과시키겠음. 네 번째 전문위원회 자격임. 의견을 주시기 바람.

○ (유재길 위원) 전문위원회 설치조항에 새롭게 된 자료대로 의견을 내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의 간사 문제에 대해서도 제안을 하겠음. 문형표 전 장관의 항소심 판결문이나 참고해 보면 복지부 공무원들이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광범위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나오고 있음. 이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하여 복지부가 일정부분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함. 간사 배제(안)은 여기 (안)에 적시된 대로 의견을 내고자 함.

○ (박능후 위원장) 쟁점이 3가지임. 자격요건 확대하고, 두 번째 간사

에 정부 인사 배제, 세 번째 임기 3년으로 확대 3가지가 동시에 논의되고 있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자격에서도 위원회 위촉을 복지부 장관의 위촉이 아닌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한 위촉까지 되어 있음. 두 쟁점에서 두 가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 총 4가지 사안이 되겠음.

○ (최정표 위원) 전문위원회는 핵심이 정부 입김을 배제시키는 것이 중요한 장치가 되어야 할 것 같음. 새로 수정(안)이 대부분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 새롭게 제안된 내용들이 좀 더 발전된 방안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듦.

○ (간사 류근혁) 허락해 주시면 이렇게 (안)을 준비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음.

○ (박능후 위원장) 네.

○ (김성주 위원)현재 기금운용위원도 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는지.

○ (박능후 위원장) 추천을 받음.

○ (김성주 위원) 현재 산하 전문위원회도 그러한지

○ (최경일 국민연금재정과장) 네.

○ (김성주 위원) 이 제안내용은 다른 전문위원회와 다르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복지부 장관이 아니고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위원 추천을 하자는 제안인지.

○ (윤경식 위원) 다른 위원회하고의 형평성도 중요하기는 한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의결권행사 부분에 대해 관심도 많고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측면이 있음. 단순히 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것보다는 추천을 받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위촉하는 제도로 해줌으로 인해 외견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것을 너무 답습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음.

○ (간사 류근혁) 자격요건 관련하여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정책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활동한 자를 추가하는 부분은 전문위원회에서 이미 관련분야 전문성 부분을 아주 강하게 표현되어 있을 정도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 자격을 정리 해놨음. 그런데 정책 분야 5년이라고 하면 상당히 범위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이 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기 때문에 전문성에 대한 문제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겠다는 측면에서 처음부터 이 부분을 배제했던 것임. 두 번째 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고 정부의 책임성들을 감안하고 현재 전체적으로 위원회 위촉 부분을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정합성을 위해 같이 검토를 했던 것들임. 세 번째 간사 문제는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복지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 소속된 하부위원회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되겠음. 거기에서 복지부의 담당 과장이 간사 역할을 하게 되는 부분들임. 여기서 제안하신 것처럼 기금운용본부 책임투자실장이 된다는 얘기는 이게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가 직접 기금운용위원회의 어떤 부분들을 지시하고 개입하는 부분들이 발생하는 기형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음. 다만, 현재 수탁자책임전

문위원회 간사는 복지부의 과장과 기금운용본부장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됨. 직접 기금운용본부에 있는 실장을 간사로 두고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거버넌스가 정책 결정과 집행이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를 감안한다면 기존의 원칙과 상반되는 것들로 보여 짐. 마지막 위원회 임기 2년을 3년으로 하는 부분들은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임기를 연장할 필요성이 부족해 보이는 것은 사실임.

○ (유재길 위원) 위원 구성 관련하여 복지부 장관이 위촉한다고 추천을 받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는 의미가 노동계에서 추천을 했는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못 받은 경우 추천권이 배제되는 상황까지도 올 수 있는 것인지.

○ (이찬진 위원) 그런 것임.

○ (간사 류근혁) 그렇게 될 수도 있음.

○ (윤경식 위원) 극단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기금운용위원회의 운영방식이라고 봐야함. 왜냐하면 추천하는 것을 상당히 존중하게 됨.

○ (유재길 위원) 의미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해석은 정확하게 그렇게 될 우려가 있음.

○ (이찬진 위원) 윤경식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잘못하면 위원을 아무도 결정을 못할 가능성도 담합을 하든지 아니면 비토가 되어 안 되든지 이런 우려사항이 있어 기금운용위원회나 실무평가위원회나 산하 전문위원회들을 추천대표성의 추천권을 주고 그 부분에 논의, 혼란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사회적 제 관계들의 균형을 잡

고 있는 이 부분이 무너질 수 있을 것 같아 우려스러움.

○ (박능후 위원장) 제기하신 우려가 현실적으로 많이 드러난 바가 있음. 과거에 노사정위원회 활동할 때 노사정위원장이 위촉하는 것과 상호 협의하기로 하였는데 노사 간 상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절대 안 된다고 하니 위촉이 안 됨. 심의·의결을 거쳐 위촉하는 것이 민주적인 방식일 것 같지만 때때로 큰 부작용도 있다는 역사적 경험이 있음.

○ (김성주 위원)「국민연금법」상 기금운용의 관리운영 주체가 복지부 장관이고 기금운용위원장도 겸하는데 산하 전문위원회의 위원 위촉을 장관이 하지 못한다고 하면 과도한 독립성 부여가 될지도 모름. 유럽의 연기금들 보면 높은 정부는 독립성을 유지하지만 위원의 임명은 다 정부 측에서 함. 정부가 임명하되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독립성이지 정부와 무관하게 운영하는 것이 독립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 함. 윤경식 위원님께서 담고 계신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원안대로 장관이 위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박능후 위원장) 자격요건의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문미란 위원) 6호의 자격요건 대해서만 이해상충에 관한 단서조항이 적용되는 것이 3항으로 옮겼음. 그 제안내용은 타당한 것 같은데 어떠하신지 모든 위원회 자격에서 컴플리트는 배제해야 된다는 것으로 하는 것은 타당한 것 같음.

○ (이찬진 위원) 합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더 여쭤보겠음. 일부 노동자 단체 쪽에서 의견을 내신 게 과장님께 개인적인 사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님. 간사 위원 중에서 연금재정과장 관련된 부분이 삼성물산 사건의 기억이 생생해서 그 문제에 관한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음. 연금재정과장께서 그때 깊이 부적절하게 개입을 했던 역사적인 기록들이 남아있는 부분이 현재의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된 발단이 되어지고 해서 이 부분을 기금운용위원회가 어떻게 녹여낼 것인지가 문제제기일 것 같음. 원천적으로 정부로부터 독립은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음. 1년, 2년 경과기간을 둬서 그 부분에 관한 문제를 조금 해소하고 나갈 가능성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음. 구조적으로 연금정책국이나 연금재정과에서 이 거버넌스에서 배제된다면 개인적으로 전혀 동의하는 것은 아님. 한시적으로 1년~ 2년 정도의 완충기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그것에 관한 것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음.

○ (박능후 위원장) 문미란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것부터 먼저 가부를 결정짓고 가야될 것 같음. 영리활동을 한 자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자를 제외하는 것을 특정하게 6호에만 되어 있던 것을 앞에 1, 2, 3, 4, 5호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올리자는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문미란 위원) 어디든 위원 위촉할 때는 컴플리트가 있는지에 대한 서약을 함. 6호의 자격 위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

로 끄는 게 규정상 맞을 것 같음.

○ (이찬진 위원) 이견이 없으실 것 같음.

○ (조홍식 위원) 수정(안)이 더 좋을 것 같음.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한다는 것은 위원장하고 겸직이기 때문에 그대로 정부(안)으로 두는 게 좋을 것 같음. 임기는 조금 다른 것이지만 동일하게 같이 2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음.

○ (代 이찬우 차관보) 간사 문제 충분히 이해하는데 만약 간사가 복지부에서 빠지게 되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 수 있을지, 실무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 느낌임. 책임위원회 논의된 결과를 최고 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음. 그런 부분은 의결하실 때 행정적으로는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음. 자격요건 부분은 영리활동은 동의하나, 전문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게 전문성 부분인데 기금운용 관련 정책분야 5년 이상이 무슨 의미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음. 이 부분은 좀 더 전문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지 생각이 듦.

○ (이찬진 위원) 노동자 단체에서 말씀하신 우려사항 부분에 관하여 절충하면 어떨까 함. 간사께서 안건이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없도록 하는 운영규정 같은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항을 선언적으로 넣는 식으로 하면 어떨까 함. 과장님 같은 간사님이 안 계시면 틀림없이 위원회가 안 돌아갈 것이고 비상임위원회의 한계가 드러날 것임.

○ (박능후 위원장) 간사를 연금재정과장으로 두되 의결권이라든지 적극적 의사개진을 안 하도록 함.

○ (이찬진 위원) 간사는 원래부터 의결권 없음. 의안이나 이럴 때 의견을 개진할 수 없도록 하는 정도만 선언적으로 함.

○ (간사 류근혁) 간사가 회의진행 관련하여 설명이나 보고나 하지 말라는 말씀이신거 같음.

○ (이찬진 위원) 보고는 함.

○ (이상철 위원) 원래 의결권이 없는데 없다고 명시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음.

○ (박능후 위원장) 이찬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자중하는 모습 보이도록 노력하겠음.

○ (김성주 위원) 이 문제는 복지부의 책임과 보완을 분명히 한다는 측면에서는 복지부의 재정과장이 들어오는 게 맞다고 봄. 다만, 기금운용본부장이 공동 간사가 되는 것은 격이 좀 안 맞는 것 같음. 현재 책임투자팀장인데 책임투자실장으로 간사를 두면 맞을 것 같음. 만약 안 하려면 국장님이나 차관님이 맞을 것 같아 그 정도 수정의견을 드림.

○ (이찬진 위원) 그런 격하고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운용하려면 책임투자실장이 할 역할이 크고 실무적으로 이 안건에 관해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는 분들이 위원들을 백업해 주어야 될 것 같음. 간사역할을 하려면 정부 측은 재정과장이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쪽은 실장이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음. 기금운용본부장 격이 안 맞는

것은 아닌 것 같음.

○ (김성주 위원) 격도 안 맞고 책임투자실장이 정확하게 서포트 할 수 있을 것 같음.

○ (이경상 위원) 7호 ‘기금운용관련 정책분야’ 가 복지부의 기금관련 정책을 하는 담당공무원 얘기인지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에 있던 분인지 보기에 따라 모호하게 들림. 기금운용위원회가 있는데 전문위원회에 기금운용 관련 정책을 했던 분을 자격으로 넣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음.

○ (박능후 위원장) 다른 부분들은 수정(안)이 대체로 채택이 됐는데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까지 기금운용 관련 정책분야라는 것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하는 이의제기가 들어왔음.

○ (이찬진 위원) 개인적으로 이견 없음.

○ (박능후 위원장)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자격요건은 원래 (안)대로 가도록 하겠음.

○ (김성주 위원) 원래 (안)대로 하는데 ‘다만, 이해상충’ 이 부분은 추가로 해서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림.

○ (이찬진 위원) 본부장이 아니라 실장 정도로 해 주시면 됨.

○ (박능후 위원장) 쟁점 4번 자격요건은 원래 이 요건으로 가되 ‘다만,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것을 전체 다 관련 내용에 넣었고, 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것으로 그대로 하겠음. 쟁점 4-2번 간사는 복지부의 연금재정과장, 기금운용본부의 책임투자실장이 간사가 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음. 마

지막 쟁점 의결권행사 사전공시임. 의견주시기 바람.

○ (이경상 위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운용사에 가점도 부여하고 있음.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이 의결권행사를 사전에 공시하고 그 목적도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사전 공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가점까지 부여하면 시장에서는 어떤 시그널인지, 결국은 국민연금이 하는 것을 따라하라는 메시지로밖에 읽히지 않게 됨. 글로벌스탠다드를 보더라도 다 사전공시를 안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처음 논의할 때는 글로벌스탠다드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해 보니 4위인 캘퍼스만 이렇고 나머지는 다 아니었음. 굳이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지 않은 것을 무리하게 넣을 이유는 없을 것 같음.

○ (이상철 위원) 사전공시 자체가 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보게 되면 국민연금의 시장지배력이 기업뿐만 아니고 주식시장에서도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투자자들이 국민연금의 행위에 대해 따라 붙는다는 것임. 기업측면도 그렇지만 주식시장 교란요인도 있고 해서 사전공시는 반대의견을 개진함.

○ (이재원 위원)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관련사항도 위원회의 자율성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심도 있는 토의가 있었음. 그런 측면에서 사전공시라는 제도 자체가 그런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듦.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됨.

○ (간사 류근혁) 간사로서 참고삼아 말씀드릴 게 있음. 의결권행사 내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의결권행사는 주총 이후 14일 이내에 공개함. 다만, 의결권전문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음. 말씀하시는 내용들의 사전공시가 대다수 기업들하고는 큰 영향력이 없을 텐데 사전공시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크거나 주주들의 관심이 큰 의결권행사 내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것임. 그런데 그런 경우 이미 의결권전문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도 사전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음.

○ (이상철 위원) 기금운용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의결권행사 결정과 세부 반대사유를 주주총회 개최 전에 공시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현행대로 간다면 원칙적으로 사전공시를 하신다는 의견인거 같음.

○ (간사 류근혁) 현재 규정으로도 원칙적으로 사전공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결권전문위원회를 통해 의결된 부분은 사전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임.

○ (이상철 위원) 사전공시를 원칙으로 놓으면 그 자체가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었음.

○ (박능후 위원장) 사전공시의 범위임. 사전공시의 범위를 현재도 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에서 사전공시를 할 것인지, 모든 안건에 대해서 사전공시를 할 것인지, 현재 하고 있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라든지 주요 결정된 것만 사전공시 한다는 것이 제안된 내용인지.

○ (간사 류근혁) 전체를 다 사전공시 하는 내용임.

○ (이경상 위원) 1번 경영참여부터 많은 논의가 있었음.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크게 반대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이 부분이라도 뭔가 해주셔야지 함.

○ (김성주 위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원안대로 했기 때문에 입장을 반영하는 것임.

○ (이상철 위원) 대한상의에서 말씀하신 게 합의정신에 맞는 것 같음.

○ (문미란 위원) 지난번 제안은 원칙적인 공시는 문제제기를 안 하셨고 보도자료 배포하는 등의 그 부분에 대해서만 삭제하자고 하셨던 것 같음.

○ (이경상 위원) 사전공시와 글로벌스탠다드라고 자료를 주셔서 그런데 찾아보니 안 하는 게 글로벌스탠다드였음.

○ (이상철 위원) 모든 기업에 대해 사전공시를 하여 부담을 주겠다는 의도는 아니실 것임. 문제 있는 기업들에 대해 사전공시를 하여 연금에 이런 액션을 취한다는 것을 보여 주겠다는 의미가 국민 여론에도 맞는 것 같다면 현행대로 의결권이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되겠음. 이쪽에서 결정한 것을 공시하는 쪽으로 현행대로 하자는 게 의견이고 지금 취지에도 맞는 것 같음. 대다수 선량한 기업, 다른 기업들까지 부담을 주면서 할 필요가 있는지가 의견임.

○ (박능후 위원장) 그 (안)을 수정(안)으로 받아들이겠음. 정부(안)은 모든 것을 공시하는 것이었는데 수정(안)은 현행처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라든지 의결권책임전문위원회에서 결정된 주요안건에 대해서 사전공시 하는 것으로 제한을 하자는 것으로 하겠음.

○ (문미란 위원)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안건인데 문제는 그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을 보도 자료로 내는 부분을 문제 삼았는데 달라져야 될 것은 어떤 것 인지.

○ (이상철 위원) 원칙의 문구가 바뀌어야 됨. ‘기금은 원칙적으로 의결권행사 결정과 세부반대사유를 주주총회 개최 전에 공시합니다’ 자체를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음.

○ (김성주 위원) 현행에 대해 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람.

○ (간사 류근혁) 현행 조항 (원칙5) ‘주주총회 개최 이후 14일 이내에 공시합니다.’라고 되어 있음. 기금은 원칙적으로 의결권행사 결정 과정과 세부반대 이유를 14일 이후, 주총 이후에 공개함. 지금 제안했던 부분들은 ‘주주총회 개최 전에 공시합니다.’라는 부분이 차이가 되겠음.

○ (최규완 위원) 공시하는 기업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모든 기업이 다 공시를 해야 되는 것인지.

○ (간사 류근혁) 일단 전체를 다 공시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고, 다음 주요안건, 전체공시를 다 하지만, 주요안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결정안건, 공개서한발송 및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등 공개 활동에 대한 부분들은 보도자료 배포 등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되어 있는 것임. 원칙적으로 전체를 다 공시를 하지만 이런 경우 보도자료를 보통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것으로 삼았음.

○ (김성주 위원) 현행 지침은 의결권행사 이후 주총 이후 14일 이내에 공시하는 것이었는데 개정(안)은 사전공시로 바꾼 것을 원래대

로 사후공시로 변경하자는 그런 수정제안이신지.

○ (이상철 위원) 추가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들은 사전 공시하도록 단서를 달아야 함.

○ (박능후 위원장) 네, 전문위원회에서.

○ (이찬진 위원)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지 의문임. 주총 소집통지서가 본부나 위탁운용사한테 주총 전 빠르면 12일 정도 전에 들어옴.

○ (이수철 기금운용본부장 직무대리) 2주 전임.

○ (이찬진 위원) 2주 전에 통지하니 송달된 것은 10일 정도쯤이면 도착할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의안분석에 들어감. 빨라도 4~5일 정도 걸릴 것이고. 결정을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얼마 전인지.

○ (이수철 기금운용본부장 직무대리) 정기주총과 임시주총이 다름. 정기주총은 3월에 몰려있기 때문에 거의 주총일 하루, 이틀, 3일 전이 정도 상황이고, 임시주총은 그것보다 조금 여유가 있지만 안건이 공개되는 시점이 2주 전이기 때문에 시간이 여유 있는 것은 아님.

○ (이찬진 위원) 사전공시는 다른 주주들한테 영향력이 그렇게 미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되지 않고 빨라야 전날 정도이고 관심 있는 사람 정도가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싶음. 그래서 사전공시에 대한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큰 것 아닌지 하는 부분이고, 사전공시 원안을 준비한 이유가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으로부터 제고하자는 결단이 아닌지 싶음.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에 관한 일정 부분의 제약을 타협하는 정도, 국민들을 설득하는 완충장치역

할도 하는 부분인 것 같음. 첫 번째하고 이 안건은 패키지로 해서 정리를 하고자 하는 취지 아니였을까 하는 생각이 듦. 형식적으로라도 사전공시가 일단 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보도자료 배포 관련된 것은 주요 사안에 대해서 하는 것이니 그 부분에 관한 우려는 없을 것 같음. 원안에 동의함.

○ (윤경식 위원) 이찬진 위원 말씀이 맞는데 이게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에 대해 사전공시를 의무화 해 놓으면 실무적으로도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 짐. 기금운용본부가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니니 결국 사전공시 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하는 것이 필요함. 모든 것을 다 한다면 그것 자체도 부담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 봄. 기본적으로 중요사안에 대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을 사전공시 하는 정도로 해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 같음. 더 중요한 것은 사후적으로 설명자료를 낸다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운영상 기금운용본부가 사전공시를 연말에, 3월에 다 검토를 하여 사전공시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2~3일 내에 수백 개, 수십 개를 한꺼번에 사전공시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함. 원칙을 정해놨는데 사전공시를 안 하는 것도 기금운용본부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금운용본부가 할 수 있도록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도와줘서 선별적으로 할 수 있다면 좋지 않겠나 생각 해 봄.

○ (이경상 위원) 글로벌스탠다드 관련하여 연기금의 옳고 그름의 찬·반 사유는 의결권 자문사들이 함. ISS나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연

구원에서 하는 영역임. 그 영역을 국민연금이 하고 가점까지 부여하면서 위탁운용사한테 강요하듯이 되는 그런 형태로 가져갈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음.

○ (최규완 위원) 사전공시의 일부 의도는 동의를 하는데 운용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음. 모든 기업이 대상이 된다면 지금 상장되어 있는 대부분 기업들이 혼란에 빠질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결정안건에 대해서 한정하면서도 어떤 문제가 되는 기업들 위주로 제한을 두지 않으면 상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업이 이런 IR이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이해해서 공시하는 게 문제가 있음. 공시가 된 다음 주식시장에서 그 정보를 반영하는 것들이 사전공시가 오히려 좀 왜곡되어 공시가 된다거나 하면 주식시장에 교란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결정안건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이것을 모든 기업에 적용하는 데는 시간을 두거나 익숙해지거나 제한된 기업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안)으로 도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됨.

○ (박능후 위원장) 논의를 단축하기 위해 수정된 (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음. 여러 실무적인 능력이라든지 주식시장에 미치는 왜곡 효과들을 감안했을 때 수정된 제안(안)은 공시를 하되 그 공시의 범위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 안건으로 한정하는 것에서 공시를 하자는 제안이 나왔고 다만, 기금운용본부에 실무적인 능력이 갖춰지면 향후에 공시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히

자는 정도로 수정(안)을 정리하겠음. 반대하시는 분이 계신지.

○ (문미란 위원) 공시를 하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결정 안건에 대해서 공시를 하고 주요안건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설명한다까지 포함하시는지.

○ (박능후 위원장) 그렇게 하겠음. 의결권행사에 대한 사전공시도 수정(안)대로 하도록 하겠음. 기본적으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결정된 주요안건에 대해서만 사전공시를 하고 그에 대해서는 보도자료와 배포(안) 등 관련 내용도 하도록 하겠음.

○ (이찬진 위원)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안건 자체가 작음. 그렇게는 곤란하고 기금운용본부에서도 내부적으로도 주요하다고 해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올리지 않더라도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음. 기금운용본부에서도 공시를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 공시하도록 하는 부분은 해 놔야 할 것 같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안건은 거의 100개 중에 한두 개이기 때문에 기금운용본부도 공시할 수 있는 유보조항을 해야 될 것 같음.

○ (이수철 기금운용본부장 직무대리) 저희의 미션이 클리어하게 정의되는 것이 가장 좋음. 현재 사후공시를 할 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프로세스가 구축이 되어 있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도 14일 이내에 날짜를 맞추기가 힘듦. 그 프로세스를 재량에 의해 바꾸기 시작하면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이 됨. 공개를 하면 공개하는 프로세스를 구축을 할 것이고 공시를 안 하면 공시 안 하는 프로세스로 가는 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임.

○ (문미란 위원) 프로세스만 구축하면 공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지.

○ (이수철 기금운용본부장 직무대리) 그 부분은 현재 규정상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음. 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부분은 공시를 통해 영향력을 어느 정도 가져갈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정책결정이 되고 나면 실무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다시 말씀을 드릴 것임. 실무적인 어려움 때문에 정책 결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 (박능후 위원장)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공시범위까지도 결정해서 정하도록 하겠음. 그러면 도입 방안 관련된 쟁점들은 대충 다 해결되었음. 다시 본안 안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음.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 방안은 원안대로, 수정된 내용은 수정된 내용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음.

□ 보고 제18-13호 :『2018년도 5월 말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잠정)』

○ (박능후 위원장) 다음 보고안건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함.

○ (최규완 위원) ’18년 하반기 시행이라는 배당관련 주주활동 개선에 대하여 지난번 위원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낮은 배당성향이나 무배당을 하는 기업에 배당을 권장하겠다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이것도 문제지만 고배당이 문제가 있는 게 적자배당을 하는 기업도 많음. 배당이라는 게 자본이익잉여금에서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교의 사례는 오너 지분이 너무 많아 자기배당을 해서 사익편취를 함. 이것을 낮은 배당이라고 하지 말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할 수 있게 특이배당으로 문항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음.

○ (박능후 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 (김성주 위원) 네.

○ (박능후 위원장) 5차, 6차에 걸쳐 장시간 토론했음. 기탄없는 의견과 또 대체로 합의 통해 의견을 도출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함. 향후에도 주요쟁점마다 같이 충분한 토의를 거쳐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이 모든 것이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 수익성,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8. 의결사항

의안번호	안 건 명	결과
18-8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	수정의결